

의안번호	제2806호
의결 연월일	2024. 7. 25. (제295회)

의결사항	원안가결
------	------

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4. 7. 1.

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06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7. 1.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남산공원 “오토캠핑장”의 시설물 폐지 및 “힐링캠핑장”의 구성에 따른 힐링캠핑장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변경

「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」
→ 「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나. 캠핑장 위치 및 운영 시설의 종류 변경

- 1) 캠핑장 위치 변경(안 제2조)
 - 고성읍 신월리 → 고성읍 수남리
- 2) 제외되는 시설에 따른 정의 규정 정비(안 제3조)
 - 카라반사이트, 카라반, 글램핑 등 정의 삭제
- 3) 시설이용료 조정(성수기, 비수기 구분 삭제 등)(별표 1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성별영향평가

· 개선의견[(복지지원과-16481(2024. 4. 19.))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<input type="checkbox"/> 제9조(사용료 감면)제1항 ⇒ 조례 개정 사항 없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제9조(사용료 감면)제1항 ⇒ ‘「주민등록법」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은 100분의 30을 감면’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	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 불수용 ⇒ 기존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은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였으며, 시설규모는 텐트사이트 등 41면으로 운영하였으나, 금번 개정을 통해 위치 변경 되는 힐링캠핑장은 텐트사이트 12면으로 운영 계획하고 있어 수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금 감면대상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718호
 - 가) 예고기간: 2024. 4. 22. ~ 2024. 5. 13.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오토캠핑장”을 “힐링캠핑장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오토캠핑장”을 “힐링캠핑장”으로, “공룡로 3165-2(신월리 657-1)”를 “남산로 6-60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오토캠핑장”을 “힐링캠핑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글램핑”이란 주방, 거실, 침실 등을 갖춘 텐트형 캠핑시설을 말하고, “텐트사이트”란”을 ““텐트사이트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텐트사이트, 카라반사이트, 카라반, 글램핑, 그 밖의”를 “텐트사이트와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중”을 “동안”으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2항 중 “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</u> <u>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 남산공원 <u>오토캠핑장</u>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치) 남산공원 <u>오토캠핑장</u>의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<u>공룡로 3165-2(신월리 657-1)</u> 일원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캠핑장”이란 남산공원 <u>오토캠핑장</u>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.</p> <p>2. “카라반”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, 욕실, 거실,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하고, “카라반사이트”란 카</p>	<p><u>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</u> <u>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힐링캠핑장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위치) ----- <u>힐링캠핑장</u>- ----- <u>남산</u> <u>로 6-60</u>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힐링</u> <u>캠핑장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

라반을 설치·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.

3. “글램핑”이란 주방, 거실, 침실 등을 갖춘 텐트형 캠핑시설을 말하고, “텐트사이트”란 텐트를 설치·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.

4. 삭 제

5. ~ 6. (생략)

7. “성수기”란 7월 ~ 8월(2개월) 기간과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, “비수기”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

8. “시설”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텐트사이트, 카라반사이트, 카라반, 글램핑,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.

9. · 10. (생략)

제10조(사용자의 책임) ① · ② (생략)

③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.

④ (생략)

3. “텐트사이트”란 -----

-----.

5. ~ 6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8. -----
텐트사이트와 -----

-----.

9. · 10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용자의 책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동안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■ [별표 1] <현행>

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(제7조 관련)

(단위:원)

시설별	사용기준 (면적)	성수기	비수기	비 고
카라반 (6인용)	1대당	150,000	120,000	
카라반 (4인용)	1대당	120,000	100,000	
글램핑 (4인용)	1대당	150,000	120,000	
카라반 사이트	1개소	40,000	40,000	
텐트 사이트	1개소	30,000	30,000	

* 1일 사용시간: 당일 14:00 ~ 익일 12:00 기준이며, 퇴실시간 초과 시
추가요금 징수

(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,000원,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,000원,
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)

* 성수기: 7월 ~ 8월(2개월),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

(예시: 24일이 공휴일이면 23일은 성수기요금 적용)

비수기: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

* 전기료와 쓰레기 수거료로 카라반·카라반사이트는 7,000원,

글램핑·텐트사이트는 6,000원으로 추가요금 징수.

■ [별표 1] <개정안>

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사용료 (제7조 관련)

(단위:원)

시설별	사용기준	이용료	비 고
텐트 사이트	1개소	45,000	

- * 1일 사용시간: 당일 14:00 ~ 익일 12:00 기준이며, 퇴소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
(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,000원,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,000원,
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)
- * 사용기준 : 1개소 /4인 (차량 1대 기준)
- 1인 추가시마다 사용료 5,000원 추가

■ [별표 3] <현행>

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(제10조 관련)

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1. 입 장
 -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,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2. 시설사용료
 -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, 요금은 선불입니다.
3. 장 소
 -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,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4. 자 동 차
 - 자동차의 출입은 23:00부터 07:00까지는 가능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 -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,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 -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.
5. 소 음
 -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.
 - 정숙 시간은 21:00부터 07:00까지입니다.
6. 위 생
 -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,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 -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.
 -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.
7. 동 물
 -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.
 - 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, 캠핑장내에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.
8. 화 재
 - 캠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 -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 -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.
9. 흥 보
 - 캠프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 -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
10. 유실 또는 피해
 -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-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.
11. 긴급사태
 -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·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[별표 3] <개정안>

힐링캠핑장 사용자 수칙(제10조 관련)

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1. 입 장
 -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,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2. 시설사용료
 -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, 요금은 선불입니다.
3. 장 소
 -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,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4. 자 동 차
 - 자동차의 출입은 22:00부터 07:00까지는 가능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 -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,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 -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.
5. 소 음
 -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.
 - 정숙 시간은 22:00부터 07:00까지입니다.
6. 위 생
 -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,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 -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.
 -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.
7. 동 물
 -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.
 - 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, 캠핑장내에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.
8. 화 재
 - 캠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 -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 -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.
9. 흥 보
 - 캠프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흥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 -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흥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
10. 유실 또는 피해
 -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-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.
11. 긴급사태
 -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·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**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****1. 재정수반요인**

- 캠핑장의 위치변경 및 캠핑장 시설(카라반, 글램핑) 제외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
⇒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,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 추계를 생략함.

작성자: 관광진흥과장 장 찬 호

□ 관광진흥법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, 관광 홍보물의 제작,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·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(屋外廣告物)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6.>

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6. 2. 3., 2023. 6. 20.>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6.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